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제8조 제3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

나. 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하고자 함

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재료”를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료 또는 용기”를 “용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을 “동(매장용 유골함의 경우에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용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997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26조제8호·제8호의2”를 “제26조제3호·제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안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제1항 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유골함의 규격과 <u>재료</u>) ① 유골함은 매장용, 안치용 및 자 연장용으로 구분하고, 그 <u>재료</u> <u>또는 용기</u>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 자 기, 옥 또는 <u>동</u> 2. (생 략)	제17조(유골함의 규격과 <u>용기</u>) ① ----- ----- <u>용기</u> ----- -----. 1. ----- ----- <u>동(매장용 유골함의 경우에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용기</u>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실시계획의 작성, 의견수렴, 공고·열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의뢰 4. 법 제11조의3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5. 법 제11조의5에 따른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청구 6. 법 제11조의7에 따른 공사완료 내용 협의, 보완시공 등 조치, 공사완료 공고 및 통보 등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7. 법 제11조의10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 선정 및 고시, 관리·감독, 자료제출 요구 및 대행자 지정 취소 등 8.·8의2. (생 략) 9. (생 략) ② (생 략) 대통령령 제2997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26조제8호·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u><삭 제></u> 3.·4. (현행 제8호 및 제8호의2와 같음) 5.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97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 ----- <u>제26조제3호·제4호</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551